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 - 146호

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6-91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1-13호(2011.4.22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강남구 역삼동 709번지 일대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8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7일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(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(2) 명 칭 :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

- 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9번지 일대
- (2) 면 적 : 18,549.7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(1) 성 명 :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신용우)
- (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16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7년 11월 14일

※ 변경사유

- 사업부지 토지용도별 면적변경(강남구고시 제2017-59호(2017.4.21.) 준공인가 변경고시 내용 반영)
- 근린생활시설(상가)에 대한 기타공용면적(지하주차장 면적) 반영에 따른 변경
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분		대지면적(m ²)	동수	층수	세대수	연면적(m ²)
계		17,535.30	6		411	71,703.8060
공동주택 (아파트)	분양	16,972.47	6	지하2층~지상25층	400	69,339.5640
	소형	352.77			11	1,403.3470
상가		210.06				960.8950

나. 토지이용계획

총 계 (m ²)	획지(m ²)			정비기반시설(m ²)	
	소 계	공동주택	근린생활시설	소계	도로
17,535.30	17,535.30	17,325.24	210.06	1014.40	1,014.40

다.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(단위 : m²)

구 분	신 설	
	소계	도로
규 모	1,014.40	1,014.40

6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주택과(☎ 02-3423-6073) 및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2-562-0759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